
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2020. 8.

국 토 교 통 부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근거 등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233호, 2020. 4. 7. 공포, 2020. 10. 8. 시행)됨에 따라 부동산 유형별 종합적인 시세 반영률, 공시가격의 조사·산정 기준 및 절차,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자료 등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날에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(자료공개)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법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, 법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,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, 법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법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날 영 제4조에 따른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.

1. 부동산 유형별 종합적인 시세 반영률
2.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조사·산정 기준 및 절차
3.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자료 및 인근지역의 실거래가 및 시세자료 등 가격참고자료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2조(자료공개)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법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, 법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,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, 법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법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날 영 제4조에 따른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.</u> <u>1. 부동산 유형별 종합적인 시세 반영률</u> <u>2.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조사·산정 기준 및 절차</u> <u>3.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자료 및 인근지역의 실거래가 및 시세자료 등 가격참고자료</u>